

# 2022년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 재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「창업 컨설팅 프로그램」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02월 14일  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

## 1 모집 개요

### □ 추진목적

-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장애인 창업지원

### □ 모집 규모

- 모집인원 00명(선착순 모집)  
\* 모집인원 완료 시 접수 마감

### □ 모집 기간

- (모집 기간) 2022. 2. 14.(월) ~ 2022. 3. 4.(금)  
※ 서류심사로 대상자 선정, 선착순 모집이나 제출서류 서류 미비 시 탈락처리

## 2 신청 자격

### □ 지원대상

- (지원대상) '21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\*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재창업 희망자  
\* 창업 교육과정(특화기술교육, 온라인 창업 교육(기초/역량/재기교육) 포함)  
\*\* 교육수료일('21.01.01.~'21.12.31.), '22년 현재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\* 증서를 소지한 자  
\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
- (예비창업자)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한 경우 폐업일(폐업신고서의 접수일)로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를 말한다.
- (업종전환 재창업자)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\*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
\*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. 단, 제조업의 경우 세세 분류(5단위)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**< 지원 제외 대상 >**

- 비영리사업(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)  
\*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
-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(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 포함)  
\*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
- 단,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
-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(사금융, 사치 향락업종,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)  
\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(참고 2)

### 3 신청 방법

#### □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
- (모집 기간) 2022. 2. 14.(월) ~ 2022. 3. 4.(금)  
\* 모집인원 완료 시 접수 마감
- (신청 방법)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
- (접수처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(재)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6층 창업지원팀 (문의: 02-2181-6521)
- (이메일) lyi2@debc.or.kr

#### □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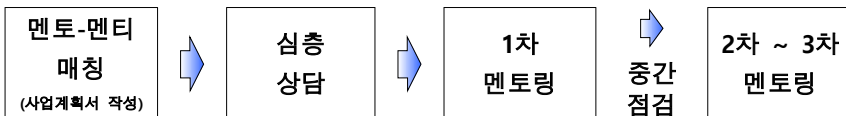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
공통 제출서류	1. 지원 신청서 각 1부(소정 양식)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.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4. 교육과정 수료증(창업넷 발급) 사본 1부

#### ※ 참고 : 제출서류 발급처

서류명	발급처	개수	
작성 서류	▶ < 1>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▶ <서식1>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센터 양식 센터 양식	1부 1부
교육 수료증	▶ 창업 교육 수료증	창업넷 ( <a href="https://start.debc.or.kr">https://start.debc.or.kr</a> )	1부
장애인 증명서	▶ 장애인증명서 or 국가유공자확인원	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처	1부

### 4 지원 내용

#### □ 컨설팅 절차



\* 중간점검은 전화조사로 진행

#### □ 심층 상담

- 멘토(전문위원)는 멘티(신청자)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 시행 → 필요업종 및 전문분야 멘토 추천
- 상담내용 : 관련된 아이템 선정, 사업계획서 작성, 창업 행정절차 지원 등

#### □ 1차 멘토링(컨설팅)

- 절차 : 멘토링 완료 후 멘토(전문위원)는 멘티(신청자) 미션 제시 → 멘티(신청자)는 미션 완료 → 2차 멘토링을 해당 기관에 신청
- 상담내용 :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, 상권입지분석, 사업계획, 자금금융, 점포개설, 실내장식, 창업 행정절차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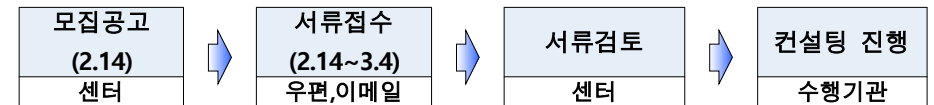
#### □ 중간점검

- 1차 멘토링 → 중간점검 시행(전화조사) → 멘토(전문위원) 매칭

#### □ 2차 멘토링(컨설팅)

- 절차 : 창업을 위한 협업 모색 멘토링 완료 → 멘토(전문위원) 창업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
- 상담내용 :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, 상권입지분석, 사업계획, 자금 금융, 점포개설, 실내장식, 창업 행정절차 지원

#### □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작성 및 제출서류	참고서류
서식1. 지원신청서 서식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붙임3. 창업넷(온라인 창업교육) 수강 안내 붙임4. 업종전환 및 기술기반 분야 예시 붙임5.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

접수번호

### 장애인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신청서

성 명*	생년월일*		성 별*	□ 남 □ 여	
장애유형 (등급)	주된 장애*	중복 장애		장애정도*	
	1. 지체장애 5. 언어장애 9. 신장장애 13. 안면장애 2. 뇌병변장애 6. 지적장애 10. 심장장애 14. 장루·요루장애 3. 시각장애 7. 자폐성장애 11. 호흡기장애 15. 뇌전증장애 4. 청각장애 8. 정신장애 12. 간장애		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중	
휴 대 폰*	이 메 일*		(보조연락처)		
주 소*					
신청지역*	1. 부산 2. 대구 3. 대전 4. 울산 5. 광주 6. 전북 7. 경남 8. 제주 9. 경기 10. 강원 11. 충북 12. 충남 13. 전북 14. 전남 15. 경북 16. 경남 17. 제주				
신청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창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전환자		사업경험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(____년 ____개월)	
직장경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(____년 ____개월)		사업자등록번호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(____)	
경력사항 (최근순서)	사업체명	근무기간	담당업무		
관련자격증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(____) * 신청한 사업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격증만 기입하고 자격증사본 첨부해서 제출				
교육이수사항 (최근순서)	교육과정명	년도	교육시간	교육기관	수료여부
신청사업 / 신청업종(아이템)					
상기와 같이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「장애인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」 지원을 신청합니다.  2022 년 ____ 월 ____ 일  신청인 : _____ (서명 또는 인)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<span style="color: blue;">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</span>					
제출 서류	필수	<input type="checkbox"/> 1. 지원 신청서 각 1부(소정양식) <input type="checkbox"/>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			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, 제33조,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#### 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사업명 :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(창업 컨설팅 프로그램)

#### ○ 수집·이용 목적

-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 신청접수 및 수수료 발급, 추후 실적(창업 여부 등) 확인, 고객만족도, 통계자료,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사, 국회나 정부 등 연계기관 자료 제공 등에 활용

#### ○ 수집·이용 항목

- 개인정보 :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연락처, 이메일, 주소, 직장 경험, 사업 경험, 경력 사항, 관련 자격증, 교육 이수 사항  
 - 민감정보 : 장애 유형 및 등급, 장애 사유,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, 장애 여부

#### ○ 선택항목

- 자격 사항정보, 경력 사항, 학력, 정보지원사업 대상 유무

#### ○ 보유·이용 기간

- 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5년(60개월)간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, 통계자료 활용 용도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바로 파기합니다.

#### ○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 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□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(정보)을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식별정보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전자우편, 소속, 직위	(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)
선택항목	자격 사항정보, 경력 사항, 학력, 정보지원사업 대상 유무	(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)
민감정보	장애 유형 및 등급, 장애 사유,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, 장애 여부	(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)
제3자 제공	창업 교육 및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연계기관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	(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)

2022년 \_\_\_\_ 월 \_\_\_\_ 일

동의자 성명 :

서명 또는 인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

## 창업넷(온라인 창업교육) 수강 안내

절 차	방 법
<b>온라인 교육신청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창업넷(<a href="https://start.debc.or.kr">https://start.debc.or.kr</a>) 접속</li> <li>② 회원 가입</li> <li>③ 기초·역량 강화·재기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초교육 :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</li> <li>- 역량교육 : 예비창업자나 창업자 대상 교육</li> <li>- 재기 교육 : 창업자 대상 교육</li> </ul> </li> <li>④ 강의 듣기 선택</li> <li>⑤ 성명·연락처·성별·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</li> <li>⑥ 강의 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</li> </ol>
<b>온라인 교육 수강</b>	온라인 교육(기초교육, 역량 강화교육, 재기 교육)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 이수
<b>수료증 신청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강의, 문제 풀이 완료 → 수료증 신청 버튼 선택</li> <li>②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스캔(pdf)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</li> <li>③ 수료증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강의 완료 후 수료증 발급</li> <li>** 역량 강화교육 및 재기교육은 문제풀이와 강의를 마쳐야 수료증발급</li> </ul> </li> </ol>
<b>수료증 발급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수료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창업넷(<a href="https://start.debc.or.kr">https://start.debc.or.kr</a>) 접속하여 My 교육실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</li> <li>* 수료 이후, 한 달 이내 수료증 발급</li> </ul> </li> </ol>

### <업종전환 예시>

분류	현재		업종전환		업종전환 여부
	업태	종목	업태	종목	
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	교육 서비스업 (85)	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(85709)	정보통신업 (58~63)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(59111)	업종전환 ※소분류(857→591) 변경
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한식 일반 음식점 (56111)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커피전문점 (56221)	업종전환 ※소분류(561→562) 변경
	정보통신업 (58~63)	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(58122)	정보통신업 (58~63)	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(58111)	업종전환 불인정 ※소분류(581) 동일
제조업	제조업 (10~34)	빵류 제조업 (10712)	제조업 (10~34)	도시락류 제조업 (10751)	업종전환 ※세분류(1071→1075) 변경
	제조업 (10~34)	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(10741)	제조업 (10~34)	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(10742)	업종전환 불인정 ※세분류(1074) 동일

※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,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### <기술기반분야 >

구 분	산업분야	
4차 산업혁명	혁신성장 BIG3 분야	자율주행차, 의료기기, 전기수소차,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
		지능형로봇, 신재생에너지, 서비스플랫폼, 인공지능,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, 드론, 실감형콘텐츠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스마트시티, 재난안전, IoT, 5G+, 이차전지, 스마트제조
소재/부품/장비	바이오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에너지, 전기전자, 기초화학, 환경, 자동차, 기계금속	
중소기업 성장기반	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, 조선, 식품, 금속, 일반기계, 정밀기계, 전기전자부품	

\* 기술기반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참조

\*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. 단,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(5단위)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.

###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	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	중 담배 증개업
46107	중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증개업
46209	중 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	중 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	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	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	중 약국, 한약국
47859	중 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	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
47993	중 다단계 방문판매
52991	중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	중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	중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	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‘착한 임대인’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‘20.12.~’21.6.) (4page 참고)
표준산업분류	업종
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	

	지속 중인 부동산 증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증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증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가능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창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(경영애로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)지원 대상에 포함

- 1. 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
- 1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일반유희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- 1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/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용자 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(추가) 일반유희주점업(56211),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(추가)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- 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  - \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    -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  - \*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- 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  - ▶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(47859) 지원불가
    -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  - ▶기타
    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    -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, 업태·종목란에 “수제맥주” 기재 여부로 판단